

의안 번호	16
----------	----

2026. 7.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
----------	----

제출년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창원시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퍼센트 이상인 사회로서 창원시는 2026년 1월 말 기준 21퍼센트에 해당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함.

2.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 법령: 붙임 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1) 입법예고(2026. 4. 8.~4. 28.)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 5) 창원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26. 3. 27.) 결과: 원안 가결
- 6) 현행 조례: 붙임 3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31년 12월 31일</u>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원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창원시의 출연금
2. 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도·육성
2.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사업
3. 노인의 교육·건강증진·사회참여활동(봉사, 취업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서비스
4.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창원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업계획
3. 제5조에 따른 기금 지원사업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창원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장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노인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부칙 생략>